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2505호
- 발 의 자 : 김평남 의원(찬성자 30명)
- 발의일자 : 2021년 5월 28일
- 회부일자 : 2021년 6월 1일

2. 제안이유

- 가. ‘애완동물’ 용어는 「동물보호법」 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으로 잔존해 있음.
- 나. 또한,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이란 말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되어,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 중임.
- 다. 이에 1,000만 명을 넘어선 반려인구의 증가와 국민정서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반려동물에 관한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람의 제한에 관한 규정 중 ‘애완동물’ 용어를 ‘반려동물’로 개정함.(안 제7조제4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인구의 증가와 국민정서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애완동물’이라는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애완동물(愛玩動物, pet)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가리키며 가축의 한 부류라 할 수 있지만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분리하여 부르는 게 보통이고,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¹⁾ animal)은 인간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말함.
-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1983년 10월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로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하면서 ‘반려동물’이란 개념이 생겨났는데,

오늘날에는 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니라, 반려자(친구)로서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란 표현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음.

1) companion은 com(함께)과 pan(빵을 먹는 사람)이 합쳐진 어휘로 “빵을 같이 먹는 사람”, “식사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동료, 친구, 벗”을 뜻하게 됨.

-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애완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2008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시행령」이 ‘반려’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2015년 개정된 법률(13023호)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제9조의2(반려동물 배송 방법의 제한)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2017년에 개정된 법률(제14651호)에서는 반려동물 등 동물 복지에 관한 사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했고,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2020년 개정된 법률(제16977호)에서는 반려동물의 정의를 규정하고(제2조), 학대를 금지하며(제8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의2. (생략)
-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이 밖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제32조), 반려동물을 위한 장
표시설(제33조의2)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와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도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1983년 10월 빈에서 인간과 애완
동물의 완(玩)자가 ‘완구류’의 완(玩)으로 동물을 희롱한다는 뜻
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반려동물’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동물이 단순히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인간과 함
께 살아가는 존재/생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측
면에서 철학자들의 동물권에 대한 논저와 주장들이 이론적 뒷받
침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실제로 현대인의 인식변화와 동물보호법 제정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
다고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지영	02-2180-8115

의안번호
2505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평남	2021.5.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상 용어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람의 제한에 관한 규정 중 ‘애완동물’ 용어를 ‘반려동물’로 개정함. (안 제7조제4호)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5.28일 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개정안은 「동물보호법」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현행 조례의 용어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하는 내용임. ○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및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시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상 임 위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임위 안전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 		
향후계획	○ '21.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조례 시행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최우진(☎2133-4195)	담당 조서영(☎2133-4185)